

Compliance Program 운영규정

2002. 11. 01. 제정

2013. 06. 13. 개정

2020. 03. 31. 개정

2023. 07. 28 전면개정

제1장 일반원칙

제1조 (목적) Compliance Program 운영규정(이하 'CP 운영규정'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규정'의 산하 규정으로, 회사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준수를 통해 회사와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 정의) CP 운영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점검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뜻한다.
2.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과 더불어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준수해야 할 기타 법규를 의미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최고경영자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한다.
5.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서로, 카드Compliance팀이 이에 해당한다.
6. 위험관리 부서는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로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한 부서를 뜻한다.
7. 임직원은 고용 형태나 종류와 무관하게 회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뜻한다.

8. 제재 조치는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 행위, CP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를 뜻한다.
9. 법 위반 행위는 자율준수관리부서에서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로, 행정기관, 사법기관, 기타 제3자에 의한 문제 제기 및 판단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자율준수관리부서가 직접 검토하여 법 위반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0. 자율준수편람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
11. 인센티브는 CP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회사, 고객, 협력사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

제 3 조 (규정의 제·개정)

- ① 이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주관부서의 주관으로 제·개정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② 업무환경 및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의 내용 변화 반영을 위해 월 1 회 이상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이 규정의 제·개정시 모든 임직원에 공유하여야 한다.
- ④ 이 규정의 개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사규 등의 개정 또는 단순한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개정의 경우 이 규정의 개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권한

제4조 (최고경영자의 의무)

- ① 최고경영자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가 회사 운영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부서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⑤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부서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최고경영자의 권한)

- ① 최고경영자는 CP 운영 관련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진다.
- ②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선임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 ③ 최고경영자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④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등

제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① 준법감시인 규정 제3조(준법감시인의 선·해임)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준법감시인을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관리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준법감시인)의 선임 사실은 모든 임직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제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CP 및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조사, 자료 제출 요구 권한
- 2. 위 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대한 시정 요구 권한
- 3. 위 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인사 제재 조치 요구 권한
- 4. 기타 CP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으로써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제8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 3.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 4. CP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사전감시 체계의 운영
6.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 CP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7. 위 6호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8. CP 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의 선정
9. 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 연도 CP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경영계획에의 반영
10. 내부 고발 시스템 운영 결과의 이사회 보고, 효과성 평가 결과의 최고경영자 보고
11.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협조 및 지원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9조 (자율준수관리부서의 업무)

- ① 자율준수관리부서 소속 직원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3절 임직원의 의무

제10조 (임직원의 의무) CP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의 준수 및 자율준수편람에 대한 숙지
2. 고객 및 외부 거래처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노력
3.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 업무수행 중 확인한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제보
4.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CP 관련 교육 목표 달성
5. 자율준수관리자의 점검, 조사, 자료 제출 요구시 성실한 대응

제11조 (사전 업무 협의)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자율준수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동종업계 관계자의 접촉, 타 계열사와의 거래,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에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자료 작성과 제출
 2. 위 1호 이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②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사전 업무 협의 전 협의 대상 업무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먼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내부 고발)

① 임직원은 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자율준수관리부서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제보하지 않거나 같이 행위를 한 경우 귀책 사유의 유무 및 경중에 따라 법 위반 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3장 CP의 운영 등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제13조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최고경영자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의 CP 도입 및 운영의지 공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공표 및 의지 천명 대상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회사 내 모든 부서의 연간 MBOD에 CP 실천의지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CP 운영 현황 및 성과 검토

제14조 (CP 운영 현황 및 성과 검토)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여 최고경영자에 분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목표를 정량 지표로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내 게시판, E-mail 등의 방법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3절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교육

제15조 (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 배포 시 위험관리 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의 활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개정 및 변경 소요를 월 1회 이상 검토하여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편람은 모든 직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한다.

제16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

- 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P 관련 연간 교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자율준수편람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반기 1회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취지 및 목적
2. 교육 대상자 및 부서
3. 교육 전담강사의 자격(전문지식, 업무경험, 경력)
4. 교육내용 및 교재 활용
5. 교육의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등)
6. 교육의 효과성 평가 방법 및 후속조치 방안

- ② 교육시 이전 교육의 효과성 평가 결과, 임직원 VOC, 공정거래법 개정, 법규 개정 중 2가지 이상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회사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상대로 한 교육 과정 및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관리 부서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부서는 CP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교육 전담부서의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전담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자율준수관리부서의 지원 요청에 응해야 한다.

- ⑤ 자율준수관리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교육성과가 저조한 임직원을 선정하여 보강 교육을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⑦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를 선정하여 특별

교육을 연 1회 이상 명령해야 하며, 명령을 받은 자는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임직원들의 이해수준 등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교육 효과성 평가 지표는 참석률, 직원 만족도, 이수율, 불만 건수, 직원 성과달성도 중 2가지 이상으로 한다.

⑩ CP 관련 교육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자율준수관리부서가 시행한다.

제4절 사전감시 체계

제17조 (사전감시 체계)

① 회사는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사전감시 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2. 사전 업무 협의 제도
3. 직접 보고 체계
4. 내부 고발 시스템

제18조 (위험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관리부서를 통하여 법 위반 행위 발생 등 확인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 평가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의 주체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관리부서 등)
2. 평가 대상 업무 또는 부서
3. 평가 결과 (적정/보완/개선 3단계로 구분)
4. 미비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방안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성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사항을 발견하면 이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사전 업무 협의 제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 1항의 검토는 대표이사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이하 'CRB'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 ③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적용범위 및 구성원, 운영 등은 '내부통제위원회(Compliance Review Board) 규정'을 따른다.

제20조 (직접 보고 체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자율준수관리자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최고경영자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내부 고발 시스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하기 위한 내부 고발 시스템을 내부통제기준 제29조(내부고발제도의 운영)에 의해 운영한다.
- ② 내부 고발 시스템은 모든 임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라 설치된 내부 고발 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부서 소속 임직원은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조사관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 고발 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법 위반 행위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 제23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절 제재 및 인센티브

제22조 (법 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등 제재 조치를 HR팀에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의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 1호 내지 2호 행위로 인해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부서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위 1항에 따른 행위 이외의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사규 위반행위자 또는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 미참석 등 CP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로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방법, 기준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HR팀과 협의를 통해 상벌세칙,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 (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용을 통한 회사의 법 위반 예방 및 법률 비용 감소에 기여한 임직원, CP 교육 실적 우수 임직원 등 회사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격려금 등 포상

2. 자율준수관리자 명의 상장 수여

3. 이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위반 행위 시 제재 경감 또는 면제

③ 기타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고 자율준수관리부서가 시행한다.

제24조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② 효과성 평가 수행 인원은 적절한 자격(공정거래 및 법규 관련 업무 경험, 감사 수행 경험, 관련 자격증 보유 등)을 갖추고 평가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전문가 집단에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효과성 평가는 타 감사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 및 기록의 보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제25조 (효과성 평가의 활용 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제24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최고경영자에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고, 개선 방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 및 인센티브 지급, 예산과 조직 운영의 변경, CP 운영규정 개정 추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26조 (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관리부서는 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해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CP 관련 자료를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해 보관하여야 한다.
 1. 부서별로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2. 부서별로 외부 거래(업무)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공문 등
 3.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및 기타 법규와 관련하여 부서가 직접 수신한 문서 일체

제27조 (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2. 11. 01 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제재)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한다.

제 3 조 (자문) 경쟁법 관련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 칙 (2013. 06. 13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3. 31 개정)

제 1 조 (경과규정) 이 규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부 칙 (2023. 07. 28 전면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재직 중인 준법감시인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로 본다.